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자료제공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b>6월호 게재내용</b>
I. 벌칙개요 II.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b>7월호 게재내용</b>
III.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벌칙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비밀누설</p> <p>-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법제27조제3항)</p>	법제27조제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p>◆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의 위반</p> <p>◇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제4조제1항)</p> <p>-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법제4조제2항)</p>	법제4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2. 협조요청 등 명목여허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5.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 위반</p> <p>◇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제5조)</p>	법제5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p>●선금금 지급규정 위반</p> <p>◇ 법정기일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등</p> <p>-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는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제6조제1항)</p> <p>-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제6조제2항)</p>	법제6조	//
<p>●부당한 수령거부등의 금지규정 위반</p> <p>◇ 원사업자가 목적물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법제8조)</p>	법제8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p>●기성 및 준공검사규정 위반</p> <p>◇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내에</p>	법제9조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p> <p>-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함(법제9조제1항)</p> <p>-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법제9조제2항)</p>	<p>법제9조</p>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p>
<p>◆부당반품 규정 위반</p> <p>◇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법제10조제1항)</p> <p>- 원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반품으로 봄(법제10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li> <li>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li> </ol>	<p>법제10조</p>	<p>//</p>
<p>◆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p> <p>◇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불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됨(법제11조제1항)</p> <p>- 부당감액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음(법제11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li> </ol>	<p>법제11조</p>	<p>//</p>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기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p> <p>◆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제 청구</p> <p>◇ 물품구매대금등의 조기결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법제 12조)</p> <p>◆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 위반</p> <p>◇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제13조제1항)</p> <p>◇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제13조제2항)</p> <p>◇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p>	<p>법제12조</p> <p>법제13조</p>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p> <p>//</p>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제13조 제3항)</p> <p>◇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제13조제4항)</p>		
<p>◆ 설계변경(A/S)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 위반</p> <p>◇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p> <p>-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p> <p>- 또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법제16조제2항)</p>	법제16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p>◆ 부당한 대물변제</p> <p>◇ 수급사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한 경우</p> <p>-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법제17조)</p>	법제17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p>◆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p> <p>◇ 부당한 경영간섭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p> <p>-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법제18조)</p>	법제18조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p>◆ 원사업자의 보복조치</p> <p>◇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p> <p>-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19조)</p>	법제19조	//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p>● 원사업자의 탈법행위</p> <p>◇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p> <p>-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제20조)</p>	법제20조	//
<p>●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p> <p>◇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p> <p>-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 범위반 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법제25조제1항)</p> <p>-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음(법제25조제4항)</p>	법제25조	//
<p>●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p> <p>-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함(법제30조의2제1항제1호)</p>	법제30조의2 제1항제1호	3천만원이하 과태료
<p>●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p> <p>-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법제30조의2제2항제2호)</p>	법제30조의2 제2항제2호	//
<p>●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법제30조의2제1항의제3호)</p>	법제30조의2 제1항제3호	3천만원이하 과태료

## 건설업관련 법령 벌칙 편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서유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함(법제30조의2제2항)	법제30조의2 제2항	100만원이하 과태료
◆서면 미교부 또는 허위서면 교부한 원사업자	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범위내)
◆서면 미보존 또는 허위서류 작성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법제3조제3항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원사업자	법제4조	"
◆물품등의 구매를 강제한 원사업자	법제5조	"
◆선급금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6조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범위내)
◆내국신용장을 미개설한 원사업자	법제7조	"
◆부당한 수령거부를 한 원사업자	법제8조	"
◆공정·타당치 않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한 원사업자	법제9조	"
◆부당반품을 한 원사업자	법제10조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원사업자	법제11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를 한 원사업자	법제12조	"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포함)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13조	"
◆건설한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	법제13조의2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법제14조	"
◆관세 등 환급액을 미지급한 원사업자	법제15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한 원사업자	법제16조	"
◆부당한 대물변제를 한 원사업자	법제17조	"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제18조	"
◆보복조치를 한 원사업자	법제19조	"
◆탈법행위를 한 원사업자	법제20조	"